조선후기 제주 於道 晉州姜氏家 雇工의 존재 양상

-강우석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조 정 곤*

- I. 머리말
- Ⅱ. 어도 진주강씨가와 고공 관련 문서
 - 1. 어도 진주강씨가 소개
 - 2. 고공 관련 문서의 종류 및 특징
- Ⅲ. 고공 계약의 실태
- Ⅳ. 준호구를 통해 본 고공의 존재양상
 - 1. 고공의 규모와 성별
 - 2. 고공의 존재 양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주 於道里에 세거한 晉州姜氏 강우석씨 댁에 소장된 明文, 不忘記, 準戸口를 통해 이 가문에서 고용하였던 고공의 존재 양상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먼저 어도 진주강씨가는 17세기 중반 이후 上加里와 於道里에 거주하면서 대대로 留鄕座首와 留鄕別監을 역임하였고 이러한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 또한 많은 재산을 소유한 가문이었다.

이 가문의 고공계약과 존재 양상에 대해 살펴 본 결과 17세기 후반 고공 의 계약은 명문과 불망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공이 된 이유를 기재 하지 않은 경우 명문을 작성하였고 채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기재되었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박사(myidrock@naver.com)

40 탐라문화 제66호

을 때는 불망기를 작성하였다. 고공 계약의 이유는 대부분 同色馬를 비롯하여 채무를 갚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 당시 고공계약은 대체로 5년에서 8년으로 비교적 장기간 고공으로 계약하였다. 이 가문에서 고용하였던 고공의 규모는 17세기 후반에는 4~5명이었고 18세기에는 1~3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2~3명 정도를 고용하였다. 그리고 18세기는 1~2명의 고공을 고용하였다. 이 가문에 고용되었던 고공의 성별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 고공이 조금 더 많이 고용되었다.

한편 주인이 육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거노비가 고공이 된 사례를 이 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주인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내면서 타인의 집에 고공으로 계약하여 생계를 해결하고 주인에게 신공을 바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가족단위의 고공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가문에 고공으로 고용되고 있거나 혹은 소유한 사노가 혼인하여 낳은 자식들이 고공이 되고 있어서 2세대가 함께 고공으로서 한 집에 의탁한 사례를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공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신분, 연령, 기한 등을 검토하였다. 이 가문에 고공으로 고용된 경우 대부분 공노비와 사노비였으며 양인은 1678년에 한명만 확인된다. 공노비의 경우 대부분 內資寺・內贍寺・仁順府에 속해 있는 노비들이며 寺奴 혹은 寺婢로 그 소속이 어디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편 1801년 공노비가 해방된 이후 고공의 신분을 살펴보면 대개 목자, 老閑, 향소서원 등으로 공노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고공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장성한 사람들이었으나 간혹 60대 이상의 고공도 확인된다. 그리고 자식을 낳자마자 고공으로 입적시키는 사례도 확인할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공의 기한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5년 이상 장기간고공으로 고용된 경우가 많았다. 이 가문의 고공은 고공 기간이 매우 장기화되어 앙역고공의 형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아울러 예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오랫동안 고주가의 집에 거주하면서 집안의 여러 雜役을 담당하였고 더불어 농업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제주, 어도리, 진주강씨, 고공, 준호구, 불망기, 명문

I. 머리말

조선시대의 고공은 남의 집에 의탁하여 일정기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비록 토지와 노비처럼 재산으 로서의 가치는 없었지만 조선시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였다.

조선시대 고공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분석자료 또한 관찬사료를 이용하였다. 이 후 각 지역에 남아있는 호적중초를 통해서 조선후기의 고공에 대해 구 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며 대구부¹⁾ 언양현²⁾ 단성현³⁾ 등의 호적중초 가 남아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공의 성격을 살펴 본 연구가 진행되었 다.

한영국은 먼저 조선시대의 고공은 시기에 따라 성격이 다른데 1783 년(정조 7) 고공법의 제정 전후로 그 이전 시기까지는 고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의식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무임의 사역인구를 의미하고 고공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무임이 아니라 5년에 10냥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고주와 약정한 후 고주가에 기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용 인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18~19세기의 고공에 대해 대구부 호적을 분석하여 농촌이 아닌 도회지역에서는 여성고공이 남성고 공보다 많으며 시대가 흐를수록 크게 늘어났음을 살폈다. 또한 고공의나이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나이인 어린 婢雇工들이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박용숙은 18~19세기의 언양현 호적에 나타나는 고공을 분석한 결과

¹⁾ 한영국, 『조선후기의 고공-18·19세기 대구부 호적에서 본 그 실태와 성격-』, 『역사학보』81, 역사학회, 1979.

²⁾ 박8숙, 「18·19세기의 雇工 -경상도 언양현 호적의 분석-」, 『부대사학』 7, 부 산대학교 사학회, 1983.

³⁾ 이정수, 김희호, 「17~18세기 고공의 노동성격에 관한 재해석」, 『경제사학』 47, 2009.

강승호, 「단성현 호적대장을 통해 본 고공」, 『역사와 실학』 17~18, 역사실학 회, 2000.

고공은 양인과 노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기가 지남에 따라 양인화가 이루어지고, 18세기에는 초엽에는 남자고공이 많았으나 시기가 지날수록 여성고공이 늘어나다가 19세기에 이르면 고공의 전부가 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고공의 나이는 양인남자와 奴를 주축으로 하여 청장년층이 주가 되었으나 점차 청소년층의 여성고공으로 변화하다가 19세기에 이르면 미성년층의 여성고공이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임금과 기한을 약정하여 고공법의 적용을 받는 고공은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나이 어린 여성고공이 장기가 보유되고 있다고 하였다.

단성현의 경우에는 17~18세기 고공의 성격을 살펴보았는데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양인신분의 고공이 점차 사라지고 노비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婢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공의 연령은 1675년(숙종 1)부터 1735년(영조 11)까지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았지만 19세기가 될수록 미성년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18세기 중반 이후의 고공은 대체로 노비화・여성화・연소화의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농업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제공을 위해 고공을 필요로했다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사역노동 등 다른 목적으로 고공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제주지역에 관한 고공에 대해서는 김동전의 연구가 유일하다. 김동전은 대정현의 호적중초를 분석하여 19세기의 고공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대정현 호적중초에 기재된 고공의 수는 총 43명이었으며 시기가 지날수록 고공이 여성화되어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부와 언양현과 같은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고공의 나이를 보면 16세에서 45세에 이르는 장년층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며 1~15세의 유년층이 비교적 많다고 하였다. 고공의 신분은 양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호적에 기재된 양인층 고공의 직역은 使令・直軍 ・平役軍・齋直・假率・鎮無・書員・募軍 등이며 중인층 고공의 직역은 業武・品官・閑良・作吏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인층이 고공을 하는 사례를 볼때 경제적으로 매우 몰락한 부류라고 보았다.4이 이상의 연구성과들은 고

공을 파악하는 주된 자료로서 호적중초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볼 때 18~19세기에 한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고공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도 진주강씨가의 사례를 통해 제주지역 고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어도 진주강씨가에는 고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준호구를 비롯하여 신분증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 紙牌, 그리고 고공 계약서 등의 문서가 전하고 있다. 특히 이들 문서는 17세기 초반부터 작성된 것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1600년대 중후반 제주지역의 고공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기존에 연구되었던 19세기보다 이른 시기에 제주지역의 거주한 고공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Ⅱ. 어도 진주강씨가와 고공 관련 문서

1. 어도 진주강씨가 소개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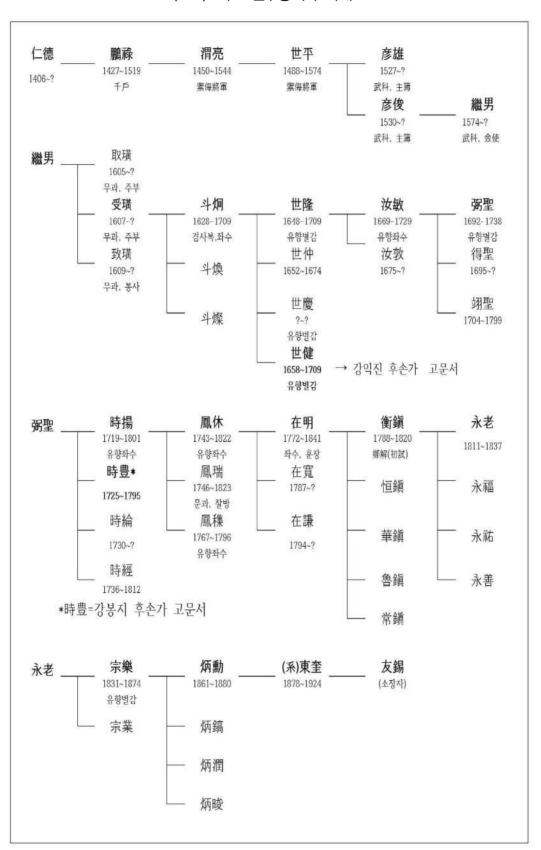
어도 진주강씨가는 현재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 있는 어도리에 거주했던 진주강씨를 말한다. 이 진주강씨가는 14세기에 강인덕(姜仁德, 1406~?)에 의해 제주도에 입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조선전기에는 토관직을 역임한 가문이었으며 17세기가 되면 무과급제를 통해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강언웅(姜彦雄, 1527~?), 강언준(姜彦俊, 1530~?)을 비롯하여 강언준의 아들인 강계남(姜繼男, 1574~?)과 강계남의 아들인 강취황(姜取璜, 1605~?), 강수황(姜受璜, 1607~?), 강치황(姜致璜, 1609) 등이 연이어 무과에 급제함으로써 제주목 일대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WWW.KCI.20

⁴⁾ 김동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대정현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단 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02-106쪽.

⁵⁾ 이 가문의 가계의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조미은, 「제주도 문중고문서의 유형과 특성」, 『고문서집성』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55쪽.

(표 1) 어도 진주강씨가 가계도



이후에는 제주목의 각종 군직을 비롯하여 유향별감과 유향죄수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또 마을 행정실무자로서 風惠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19세기에 이르면 鄕校掌議 등을 역임하였다. 즉 조선초기 토관직부터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제주목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였던 것이다.

어도 진주강씨가의 인물들이 거주했던 어도리는 현재 애월읍 봉성리일대로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에 해당한다. 6 주변에는 동쪽으로 납읍리가 있으며 서쪽으로 한림읍, 동남쪽으로 곽지리와 금성리, 서북쪽으로 귀덕리가 인접하여 있다. 이 마을의 이름은 '於音非道內山里'로 17세기후반 1678년 강두형이 제주목으로 발급받은 준호구에 기재되어 있고 18세기 초반부터 '於道內山里'로 변화되었으며 이후 於道里로 변화 후 1953년에 '鳳城里'로 개명되었다.

이 마을의 설촌 유래는 1300년(충렬왕 26)에 동·서현을 설치하고 애월, 곽지, 귀덕, 명월 등에 따라 집촌은 이루지 못했지만 몇 가구씩 거주하였고 1352년(공민원 원년)에 도내봉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동·서의 연락망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17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17세기 이 마을의 설촌은 어도 진주강씨인물인 강두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어도 진주강씨인물은 17세기 초반에 강두형의 조부인 강계남과 아버지인 강수황이 상가리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이후 강두형이 어도리 인근 마을에 거주하였던 복성문씨 문명익의 딸과 혼인하면서 어도리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거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이들은 상가리와 어도리 일대에 막대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 가문에 남아있는 180여점의 토지매매명문과 27여점의 분재기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강계남과 강수황에 의해 상가리 일대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

⁶⁾ 봉성리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 국문학과,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사회배경/방언/민요/설화/신앙」, 『국문학보』 16,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2004.

득하였고, 강두형이 17세기 중반 어도리로 이거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정착하게 되면서 어도리 일대에 많은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득하였다.

어도리에 거주하였던 진주강씨가 중에서 현재 공간된 자료를 확인할수 있는 소장처는 모두 세 곳이다. 첫째는 강수황-강두형(姜斗炯, 1628~1709)-강세륭(姜世隆, 1649~1709)으로 이어지는 장자계열의 가문으로 이 문서는 현재 강우석 선생께서 소장하고 있다.7) 둘째는 강두형의 넷째 아들 강세건(姜世建, 1658~1709)으로 이어지는 가문이다.8) 셋째는 강봉지(姜鳳祉, 1754~1846)의 후손가로 강시양(姜時揚, 1719~1801)의둘째 아들인 강시풍(姜時豊, 1725~1795)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있다. 이 세 가문은 모두 어도리 일대에 터를 잡고 살았으며 제주목에서일정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강수황-강두형-강세륭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중심으로 어도 진주강씨가의 고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 가문을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먼저 고공 계약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준호구가 다수 남아있다는 점이다. 물론 강세건으로 이어지는 가문에도 준호구를 통해고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준호구가 남아있다. 그러나 고공의 본자 수만 차이가 있을 뿐 성격을 논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 고공 관련 문서의 종류 및 특징

조선시대 고공과 관련하여 고공법제에 대해서는 주로 『수교등록』・

W W W . K C I . 2 O

⁷⁾ 이 가문에 소장된 자료는 2012년 10월 조사 수집을 거쳐 2014년에 다음 자료 집으로 간행되었다. 『고문서집성』 110(제주 어도 진주강씨·조천 김해김씨·구 좌 동래정씨 고무서), 한국학중앙연구워, 2014.

⁸⁾ 이 가문에 소장된 자료는 2012년 12월에 조사 수집을 거쳐 2015년에 다음 자료집으로 간행되었다. 『고문서집성』 114(제주 진주강씨·곡산강씨·김해김씨·경주김씨·제주고씨·동래정씨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秋官志』를 비롯한 관찬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고공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작성한 호적대장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1차 사료로서 호적대장은 식년마다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변화에 따라 고공의 성격이 어떠한지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간 고공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주요 대상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고공에 관한 자료가 다양하지 않고 수량 또한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고문서를 수집하고 제공 하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고공을 검색해보면 관련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대부분의 고공에 관한 연구는 관찬사료나 호 적대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호적대장 이외에 고공의 존재를 파악 할 수 있는 문서로서 준호구가 있다. 준호구는 호주와 처의 四祖를 비 롯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소유노비와 고공 등을 기록한 문 서로서 식년마다 작성되었다. 현재 준호구는 각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육지의 호구단자 와 준호구를 볼 때 간혹 고공이 기재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은 각 마을에 호적중초가 많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¹⁰⁾ 각 가문마다 준호구와 호구단자도 많이 남아있다. 현재 호적중초는 대 정현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많이 남아있으며 이를 통해 고공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고공에 관한 기록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수량은 많지 않지만 고공 계약과 관련된 문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바로 明文 과 不忘記가 이에 해당한다. 명문은 토지 노비 가옥 우마 등을 거래할 때 사용했던 문서이며, 불망기는 개인과 개인 양자 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자가 일을 언제

W W W. KCI. 2

⁹⁾ 이와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고공정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강승호, 「조선후기 고공정제 연구」, 『역사와 실학』10·11, 역사실학회, 1999. 정긍식, 「1783년(정조 7) 고공정제의 성립과정」, 『서울대학교 法學』59, 2018.

¹⁰⁾ 제주지역의 현존하는 호적중초는 총 22개 동리에 달하며 그 수도 700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허원영, 「제주 애월읍 수산·중엄·하가리 고문서와 조선후기 제주의 부세운영」, 『고문서집성』 10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9쪽.

까지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문서이다. 고공 계약 문서는 육지에서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서이며 비슷한 自賣文記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문에는 고공 계약과 관련하여 1640년(인조 18)에 작성된 明文 1점과 1658년(효종 9)과 1702년(숙종 28)에 작성된 不忘記 2점이 남아있다.11) 이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고공의 계약 방식이 어떠했는지 고공이되는 이유, 雇價, 고공의 기간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으므로,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에 고공의 계약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이 가문에는 1678년(숙종 4)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51점의 준호구가 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9점을 통해 고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2) 고공이 기재된 준호구가 51점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제주지역에 한해서 볼 때 고공의 기록이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3) 고공이 기재된 문서를 시기적으로 수량을 확인해보면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이 2점이며, 18세기에 12점, 19세기에 4점이다. 해당되는 인물은 강두형(姜斗炯, 1628~1709), 강세룡(姜世隆, 1648~1709), 강시양(姜時楊, 1719~1801) 강봉휴(姜鳳休, 1743~1822), 강종락(姜宗樂, 1831~1874), 강병훈(姜妤勳, 1851~1880) 등이다. 이를 통해 어도 진주 강씨 가문에서는 적어도 17세기에 이미 고공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문에 남아있는 고공과 관련된 준호구와 명문 및 불망기는 17세기 중후반에 작성된 것이 남아있다. 이는 정부에서 雇工定制를 논하기

표거 는만, 102ㄱ.

¹¹⁾ 이외에도 제주고씨 고재일 가문에는 고공과 관련하여 불망기 4점이 전하고 있고 있다. 그러나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¹²⁾ 이외에 『고문서집성』 114의 어도 진주강씨 강익진 후손가 고문서편에 강두형 과 관련된 준호구 2점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준호구는 1702년과 1705년에 작 성된 것이다. 『고문서집성』 114, 준호구8~9, 299-300쪽.

¹³⁾ 예를들어 김동전은 1807년 · 1825년 · 1843년 · 1861년 · 1879년 · 1898년에 해당되는 대정현의 동성리, 자단리, 금물로리, 중문리의 호적중초를 살펴보았다. 그결과 고공의 수는 43명이며 雇主戶는 29호로 상당히 미미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동전, 앞의 논문, 102쪽.

이전에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서 시기적인 특징이 있다. 고공정제는 고 공의 신분이 다양하여 雇工律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사목으로 제정하여 고공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자 하여 1680년(숙종 6)에 우의정 민정중에 의해 처음 건의되었다. 그 렇기 때문에 민정중은 고공의 유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관청에 등록하여 입안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즉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고 있었던 사람과 구분을 하자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14)

이와 같이 정부에서 고공에 관하여 논의가 있기도 전에 고공에 대해 알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고공정제 이전에 고공이 될 때의계약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680년을 전후로한 준호구를 통해서 고공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1680년대 이전에 작성된 호적대장에서 고공이 기록된 사례는 단성현의 사례가 있음을 연구 성과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 그러므로 비록 그 수량은 많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고공정제를 논하기 이전의 지역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공에 관한 기록이 제주지역에 남아있다는 점은 부족했던 고공에 관한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는점에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고공 계약의 실태

고공은 雇主에 의탁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노동력을 지불하는 존재이다. 대부분 고공이 되는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당시생산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으므로 단기간, 혹은 장기간 동안 남에게 의지하며 생계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고

¹⁴⁾ 강승호, 「조선후기 고공정제 연구」, 『실학사상연구』 10·11, 역사실학회, 1991, 565쪽.

공은 조선초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고공이 되었는지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몇몇 문서에는 간단하게 '생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生計無路)'와 같은 피상적인 문구로만 그 이유를 기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고공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고공 계약 문서가 많이 남아있는 편은 아니다. 다만 몇몇 문서들을 통해 볼 때 고공이 되려는 이유를 간단하게 기재 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 남아있다. 또한 그 가 운데 제주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제주지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고공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서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강우석선생 댁에 소장된 여러 문서들 가운데 3점을 통해 고공 계약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무오년 10월 27일 동리거 강초관전 불망기 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藏字場의 목자로서 他條로 同色馬를 납부할 수 없으므로 仇郎台星 2살된 雄馬를 빌려서 관에 납 부하고 그 값은 뺨이 검고 배가 희며 두 귀가 반 으로 잘리고 왼쪽 귀가 세 번 베인 10살배기 암 소 한 마리로 정하였으나 (2살된 웅마를 빌린 값 에) 미치지 못하므로 저의 <u>이들 禿男(12살)을 8년</u> 동안 (사환하기를) 언약하고 이를 총15필로 결정 하니 훗날 만일 잡담이 있으면 이 불망기를 가지 고 관에서 처치하실 일입니다.

婢 甘之(右手寸) 牧子 奴 自奉(左手寸) 證人 奴 金山(左手寸) 筆執 許孝一(着名)

〈그림 1〉 1658년 노 자봉이 강두형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

위의 문서는15) 현재 어도 진주강씨가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 가운데 고공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무 오년 10월 27일에 婢 甘之가 姜哨官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이다. 발급자 중 한 사람인 婢 甘之는 1678년(숙종 4)에 강두형(姜斗炯, 1628~1709) 이 제주목에서 발급받은 준호구에 고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서의 작성시기로 기재된 무오년은 1658년(효종 9)이며 수취자로 기재된 강초관은 강두형인 것을 알 수 있다. 강두형은 어도 진주강씨 강수황(姜受璜, 1607~1688)의 아들로서 제주목에서 유향좌수를 역임했 던 인물이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藏子場의 목자인 自奉은 동색마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강두형에게 2살이 된 수컷 말 을 빌려서 관에 납부하고 그 값으로 10살이 된 암소 한 마리를 주었으 나 빌린 값에 미치지 못하여 자신의 아들 李禿男을 8년 동안 사환하기 로 하였다. 사환 기간은 목면으로 환산하면 15필이 되었다.

제주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12개의 목장이 있고 하나의 목장마다 여러 개의 字牧場이 있었다. 목장에서 말을 사육하는 것은 대개 牧子가 담당하였는데, 제주지역에서 목자의 역은 심한 고역 중 하나였다. 특히 말을 잃어버리거나 죽게 되면 그 말과 같은 색깔의 말을 마련하여 납 부해야 했다. 그래서 말을 납부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을 팔기도 하였으며 친인척에게까지 독촉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 에서 목자가 자신의 전답을 방매하는 매매명문에 방매사유를 '同色馬' 혹은 '故失馬' 라고 기재한 경우를 많이 확인 할 수 있다.

강두형 이외에 아버지 강수황 또한 고공을 고용한 사실을 이래의 문 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고문서집성』110, 불망기1, 438쪽.



1670년 5월 15일 별감 강수황께 작성해 드리는 명문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극히 가난하여 개걸하는 사람으로서 姪子인 노만동을 제가 지난 갑신년쯤에 마침 상경하였다가 이이에게 사가지고 와서 사환하였는데 먹고 입는 생활이 어려우므로 … 木 30필로 정하여 받고 43세인 만동을 5년 동안 시환하게 하는 일로 문서를 작성하으니 지금 이후 만일 정한 기한이 되기 전에 잡담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입니다.

奴主 奴 守心(左手寸) 證人 哨官 李揖(着名) 證人 書員 夫厚逸(着名) 筆執 安仲禮(着名)

〈그림 2〉 1670년 노 수복이 강수황에게 작성해 준 명문

위의 문서는 1670년(현종 11) 5월 15일에 노 수복이 당시 별감이었던 강수황에게 작성한 명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을 가난하여 개걸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수복은 갑신년 즉 1664년에 상경할 일이 있어 출륙하였다가 자신의 질자인 노 만동을 사서 사환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고 먹고 할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43세인 노 만동을 강수황에게 5년간 고공으로 고용하게 하고 그 값으로 목면 30필을 받았다.



1724년 8월 16일 강필성께 작성해 드리는 불망기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전에 받아먹은 환곡를 갖추어 납부해야 하는데 특별한 출처가 없으므로 동댁에서 곡식 3석등을 얻어서 관에 납부한 후 제가 고공이 되기로 하고 7년동안 入居할뜻으로 불망기를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해를 채우지 못하고 작년쯤에 집에서 나왔으므로 마땅히 갚아야 할 1疋木을 갚아야 하지만 이를 마련하여 갚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흉년을 당하여 잎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므로 저의 여식인 婢實富 12살의 아이를 갚지 못한 빚과 흉년으로 구활하는 값으로 8년을 한정하여 고공으로 솔거하게 하는 일로불망기를 작성하여 드리니 일후에 만일 잡담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불망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처리하실 일입니다.

報主 婢 伊真(右手寸) 筆執 李萬實

〈그림 3〉 1724년 비 이진이 강필성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

위의 문서는 1724년(경종 4) 8월 16일에 자신을 報主라고 표현한 伊真이 강필성(姜爾里, 1692~1738)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진은 몇해 전에 받아먹은 환자를 갚아야 했으나 특별히 이를마련할 방법이 없자 강필성으로부터 곡식 3섬을 얻어 관에 납부하였고자신이 7년 동안 강필성의 집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고공이 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진은 약속한 7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결국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가격은 정목 1필을 갚아야 했다. 그리고 이때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힘든 처지가 되자 다시 생계를위해 강필성에게 구활하는 물건을 빌리고자 하였다. 이때 어느 정도를빌려갔는지 기재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1필의 정목 값과 구활의 명목으로 빌린 것을 합하여 자신의 딸인 婢寶富를 8년 동안 고공으로 솔거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강필성은 몇 년 동안비 이진을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면서 고공으로 고용하였고 이후 이진의딸인 비 보부을 8년 동안 역시 고공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16)

이외에도 김동전에 의해 알려진 제주고씨 고재일 가에 남아있는 불망기 4점을 통해서도 고공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면 계미년 2월 20일에 奴貴太가 高別監댁에서 계유년 9월 1일부터 갑술년 7월 30일까지 고공으로 사환하면서 田米 14와이, 正木 1疋, 狗皮衣 1개를 값으로 책정한 내용, 婢順德이 고별감댁에 여기저기돌아다니다가 3년 동안 고공으로 사환하면서 정목 1필을 바라는 내용,徐東武가 高生員에게 정목 1필을 대출한 후 갚을 방법이 없어 고공으로 사환하겠다는 내용,마지막으로 목자인 奴 石哲이 동색마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원에게 정목 1필을 빌리고 이를 갚을 방법이 없어 同生妹婢 夫業을 3 년간 고공으로 사환하게 한다는 내용이다.17)

이와 같이 어도 진주강씨 가문과 제주고씨가에 남아있는 명문과 불 망기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고공 계약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이 문서들을 통해 제주지역 고공의 계약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는 고공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양자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때 작성했던 문서가 불망기이거나 명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문은 토지·노비·가옥·우마 등을 거래할 때 작성했던 문서이며 불망기는 개인과 개인 양자 간에 산송이나채무 불이행 등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작성하는 문서이다. 제주지역에서는 고공 계약 문서로 명문과 불망기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문서는 고공 계약 문서로 작성된 것은 같지만 내용을 볼 때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작성하고 있다. 두 문서에는 모두 고공이

¹⁶⁾ 위와 같이 보부는 고공으로 계약되어 강필성 집안의 고공이 되었으나 강필성의 준호구는 1734년에 작성된 1점만 남아있다(『고문서집성』 110, 준호구9, 390쪽). 그러므로 보부가 입안고공인지 무안고공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¹⁷⁾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고씨 일가 호구자료의 분석」, 『탐라문화』 19, 탐라문화 연구원, 1998, 237-238쪽. 다만 제주고씨가의 고공 관련 계약 문서는 그 시기 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되려는 이유, 雇價, 고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불망기는 명문과 달리 고공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債務에 관계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위의 어도 진주강씨가에 남아있는 불망기 2점의 내용에서 동색마로 인해 갚은 말 값이 본 가격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빌린 정목을 갚지 못했을 때 불망기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제주고씨에 남아있는 불망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명문의 경우는 고공이 되려는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고 고가와 고용기간을 기재하였으며 채무 관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즉 고공으로 고용이 되면서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목적과 내용에 따라 구별하여 쓰고 있다.

둘째는 고공의 계약이 일종의 自賣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자매는 흉년과 기근이 발생하였을 때 빈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용인하기도 하였다. 18) 조선후기 자매문서를 살펴 본 연구에 따르면 자매는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매매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을 제외한 처와 자녀를 매매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공 또한 고용이 되는 대상만 가지고 본다 면 자매와 다르지 않음은 위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도 진주강씨가에 있는 고공 계약 문서를 살펴보면 문서를 작성하는 주체와 고공이 되는 자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노 자봉이 자신의 아들을, <그림 2>는 노 수복이 姪子를, <그림 3>은 비 이 진이 자신의 딸을 고공으로서 타인의 집에 사환하게 하였다. 또한 제주고씨가의 문서 가운데 노 철석이 빌린 동색마의 말 값을 갚지 못해 자신의 누이 비 부업을 고공으로 사환하게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고공 계약은 문서를 작성하는 주체와 고공의 대상이 되는 자가 달랐던 경우가 있었으며 계약은 자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이 가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제주지역에서 고공의 고용기간

¬¬¬, 2000, 2*)y*-2*y* r¬.

¹⁸⁾ 박경,「自賣文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하층민 기족의 기족질서」,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233-234쪽.

은 3년에서 8년까지 정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용기간에 대한 대가는 확인되는 사례로만 한정한다면 제주고씨의 사례를 통해 대략 정목 1필에 약 3년으로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와 같이 17세기 후반에는 30필에 5년인 경우도 있으므로 시기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는 해마다 雇價를 지불하는 형식은 아니었으며 무임고공과 비슷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공이 되는 이유가모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특히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고공이 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 주체가 되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값을 빌려주고 다 갚지 못한 대가로 자신의 가족을 고공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주는 해마다 고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Ⅳ. 준호구를 통해 본 고공의 존재양상

1. 고공의 규모와 성별

어도 진주강씨가에는 1678년(숙종 4)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작성된 51점의 준호구가 남아있다. 이 가운데 고공이 기재되어 있는 준호구는 모두 18점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7세기 2점, 18세기 12점, 19세기 4점이다. 남아있는 수량에 비해 고공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가문에 준호구에는 제주지역 내의 다른 가문에 남아있는 준호구보다 고공이 기재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 집안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공이 어떠한 존재 양상을 보이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많지 않지만 17세기 후반 고공의 존재를 가늠할 수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가문의 준호구보다 고공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유리하다.

그렇다면 준호구를 통해 이 가문의 고공의 규모는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준호구에서 고공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기재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 가문의 준호구에 기록된 고공의 기재는 고공 부모의 신분과 이름을 기재하는 유무에 따라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기준이 되는 시기는 1762년(영조 38)이다. 즉 1678년에 작성된 준호구부터 1759년(영조 35)에 작성된 준호구까지는 고공 부모에 대해서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에 작성된 준호구에서는 고공 부모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1678년부터 1759년까지 준호구에는 고공인에 대해 '雇工 內資寺奴牧童城丁 高丁男 年二十己亥 父私奴丁老 母司寺婢禽玉'과 같이 고공 + 신분 + 직역 + 이름 + 나이 + 생년 순으로 기록되고 다음 부모의신분과 성명을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문에는 주인이 육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노가 이 가문의 고공이 된 사례가 있는데 이 때에는 '雇工私奴 城丁 李禿男年三十八辛巳 主懷德羅万玉 父寺奴目隱山 母司私婢甘之'와 같이 고공의 생년 뒤에 주인의 거주지와 이름을 기재한 후에 고공 부모의 신분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그러므로 기본적 고공을 비롯하여 고공의 부모의 신분과 성명까지는 기재하였다.

그런데 1762년부터 작성된 준호구에서는 고공의 신분과 나이 및 이름만 기재하고 있으며 고공의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재방식은 이 가문뿐 아니라 다른 가문의 사례를 통해서도확인할 수 있다. 김동전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제주고씨는 조선후기 대정현 거주하였는데 이 가문에 남아있는 호구단자와 준호구 51건 가운데 고공의 기록이 있는 1819년(순조 19)에 작성된 준호구에는 '雇工書員梁達進年十二戊辰父申協'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의 이름만 기재되고 있다.19) 그러므로 18세기가 되면 고공을 기재하는 방식은 해당 고공에한해서만 준호구에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기 는만, ²3기기·

¹⁹⁾ 김동전은 고공에 대해 부의 이름만 기재한 것에 대해 고공은 부모의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 이름은 기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김동전, 앞의 논문, 235쪽.

58 탐라문화 제66호

그렇다면 이 가문의 준호구에 기재된 고공 보유 현황은 어떠하였을 까? 준호구에 기재된 고공에 관한 기록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어도 진주강씨의 고공 소유 현황

			77	고공 당사자			교왕父		고공 母		출자(20)
순번	작성 연대	고주	- 장 수	직역/ 신분	0름	나이	직역/ 신분	0름	직역/ 신분	0름	
1	1678	강두형 (展力副尉兼司僕)	5	私奴城丁	李禿男	38	執奴	目隱山	私婢	批	준호구1, 382쪽
				私婢	甘之	63	私奴	甘千	私婢	欣	
				入資寺奴牧童 城丁	高丁男	20	私奴	丁老	寺婢	禽玉	
				良女	丁上	22	浜	高丁周	召史	金	
				正兵東伍	高先男	32	疵	萬伊	母名	附	
	1684	강두형 (紹 鄉)監	4	私奴城丁	李秃男	44	執奴	目几円	私婢	甘之	준호구2, 383쪽
2				良女	丁上	28	疵	高丁周	召史	金	
				正兵東伍	部先男	38	疵	萬伊	母名	附	
				결락	高□彔	6	疵	萬伊	良女	鵚	
	1702	강두형 (留鄕座首)	3	內資寺婢	萬眞	36	執	莫一	寺婢	彦今	『집성』114 준호구8, 299쪽
3				執奴	於男	6	私奴	於屯	寺婢	麒	
				內資寺婢	石真	17	執	石卜	寺婢	卜德	
	1705	강두형 (留鄕 <u></u> 座首)	3	司占寺奴羅將 中軍所率	文莫男	63	執奴	文卜	寺婢	莫今	준호구3, 384쪽
4				內資待婢	萬眞	33	執	莫一	寺婢	彦今	
				執	於男	9	私奴	於屯	寺婢	麒	
	1708	강두형 (留鄕座首)	3	內資寺婢	萬眞	36	執	莫一	寺婢	彦今	『집성』114 준호구9, 300쪽
5				執	於男	12	私奴	於屯	寺婢	鯕	
				執奴	金得	4	私奴	於屯	寺婢	鯕	
6	1696	강세륭 (兼司僕 把悤	2	入膽寺奴牧保	鶈淎	21	執奴	以福	寺婢	自非	준호구4, 385쪽
0				入膽寺婢	石碧	22	私奴	邵勳福	寺婢	石今	
	1702	강세륭	3	內占寺婢	石碧	27	私奴	召隱卜	寺婢	石今	준호구5, - 386쪽
7				執奴	金終	4	私奴	業先	寺婢	碏	
				私奴城丁	李秃男	62	執奴	目隱山	私婢	拉	
8	1705	강세륭 (留鄕別監) ²¹⁾	3	內占寺婢	石碧	30	私奴	召隱卜	寺婢	石今	준호구6, 387쪽
				執	銯	7	私奴	業先	寺婢	碏	

				£14704	木子田	(=	+4	□17/43. I .	工儿台	11.4	
		_		私奴城丁	李秃男	65	執	間急山	私婢	甘之	
9	1759	강시양 (留鄕別監)	1	仁順帝奴	汝昌	54	執奴	脱植	府婢	以叔	준호구14, 395쪽
10	1762	강시양 (留鄕別監)	1		汝昌	57					준호구15, 396쪽
11	1777	강시양 (韶鄕 <u>來</u> 首)	1	內膽寺婢	興良	32	•	•	•		준호구20, 401쪽
12	1780	강시양 (留鄕 <u>座首</u>)	2	入膽寺婢	興良	35		•	•	•	준호구21, 402쪽
				入贍寺奴	興石	1		•	•		
13	1783	강시양 (韶鄕 <u>來首</u>)	2	入膽寺婢	興良	38		•	•		준호구22, 403쪽
				入贍寺奴	興石	4		•	•		
14	1786	강시양 (留鄕 <u>座首</u>)	2	入膽寺婢	興良	41		•	•		준호구23, 404쪽
				總校分軍	興石	7		•	•		
15	1789	강시양 (留鄕座首)	3	入膽寺婢	興良	44	•		•		준호구24, 405쪽
				鄕校募軍	興石	10		•	•		
				•	興太	1		•	•		
16	1792	강시양 (留鄕座首)	3	入贍寺婢	興良	47	•	•	•	•	준호구25, 406쪽
				鄕校募軍	興石	13		•	•	•	
				•	興太	4	•	•	•	•	
	1798	강봉휴 (留創座首)	3	寺婢	一义	4	•	•	•	•	준호구27, 408쪽
17				寺婢	貴女	1	•	•	•	•	
				寺奴鄕校募軍	興太	11	•	•	•	•	
18	1801	1 ママス ママス ママス ママス ママス ママス (留)を (留)を (国)を (国) マスティス (日)	2	牧子	金次萬	16	•	•	•	•	준호구29, 410쪽
				老漢	金福金	79	•	•	•	•	
19	1873	강종락 (留鄕別監)	1	鄉語員	고흥복	8	•	•	•		준호구45, 427쪽
20	1876	강병훈 (靑衿)	1	總所書員	고흥복	11	•	•	•	•	준호구46, 428쪽
21	1879	강병훈 (靑衿)	1	總書 員	고흥복	14	•	•	•		준호구47, 429쪽

²⁰⁾ 출처 가운데 표의 3번과 5번은 『고문서집성』 114집에서 인용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고문서집성』 110집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3번과 4번을 제외한 문서는 문서명, 번호, 페이지만 기재하였다.

²¹⁾ 이 당시 강세륭의 준호구에 기재된 정확한 직역은 '秉節校尉副司果 留鄕別監' 이다.

위의 표와 같이 어도 진주강씨가에 남아있는 51점의 준호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1678년(숙종 4) 강두형에게 발급한 준호구부터 1879년(고종 16) 강병훈에게 발급한 준호구에 이르기까지 총 19점의 준호구에 고공이 기재되어 있다.²²⁾ 강두형이 데리고 있던 고공은 1678년부터 1708년(숙종 34)까지 작성된 5점의 준호구에 고공의 기록이 있고 그의 아들 강세륭의 경우 1696년(숙종 22)부터 1705년(숙종 31)까지의 준호구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공은 시기가 좀 지나 18세기 중반부터 준호구에 다시 기록되고 있는데 강세륭의 증손인 강시양이 데리고 있던 고공은 1759년(영조 35)부터 1798년(정조 22)까지 9점의 준호구에 기록되고 있으며 강봉휴는 1801년(순조 1), 강종락은 1873년(고종 10), 강병훈은 1876년(고종 13)과 1879년(고종 16)에 작성된 준호구에 고공을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공이 기재된 준호구의 작성시기를 볼 때 고공이 없던 시기가 있었지만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이 가문에고공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 가문에서 고용하였던 고공수에 대해 雇主별로 살펴보면 강두형은 1678년 당시 어도내산리 1통 5호에 거주하면서 3~5명의 고공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숫자가 한 명씩 줄어들어 1708년에는 3명의 고공을 고용하고 있었다. 강두형의 아들인 강세륭은 1678년 준호구에 강두형의 촉子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해이전에 分戸한 것으로 보인다. 강세륭에게 발급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준호구는 1696년에 작성된 것이다. 이 준호구를 통해 강세륭은 어도내산리 1통 4호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강세륭은 1696년(숙종 22)에 강후봉과 석벽 등 2명의 고공을 보유하고 있다가 1702년(숙종 28)에는 강후봉은 기재되지 않고, 기존의 石碧 이외에 金終과 李禿男등 2명이 추가되어 3명의 고공을 데리고 있었다. 여기서 이독남은 강세륭의 아버지인 강두형도 데리고 있었던 고공이었는데 이후 아들에게

²²⁾ 표는 모두 21점이므로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주 10번을 참고.

옮겨 고공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1705년에는 1702년과 동일하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05년 이후부터 1758년 사이에는 이 가문에 남아있는 준호구에서 고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앞에서 살펴 본 명문과 같이 강필성이 고공 보부를 고용하고 있으므로 준호구에 기록되지 않은 고공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고공이 확인되는 시기는 1759년부터이며 강세륭의 증손인 강시양 부터이다.

강시양은 1~3명의 고공을 거느리고 있음을 준호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759년과 1762년(영조 38)에는 부노인 汝昌 한 명을 1777년(정조 1)에서는 내섬시비 흥량을 고공으로 데리고 있었다. 이후 1780년부터는 흥석을 포함하여 2명을 고공으로 데리고 있었으며 1789년(정조 13)과 1792년(정조 16)에는 흥태가 추가되어 3명의 고공을 데리고 있었다. 강시양이 고용하였던 흥량과 흥석 및 흥태는 이름으로 볼 때 모두가족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섬시비 흥량이 누구와 혼인을 하였는지 알수 없지만 흥석과 흥태를 낳았으며 그 해에 고공으로 기재되고 있음을확인할 수 있다. 1798년이 되면 어머니인 흥량과 아들인 흥석은 고공에서 제외되었으며 흥량의 막내아들인 흥태와 시비인 一父 및 貴女가 고공으로 기재되고 있다.

1801년부터는 4점의 준호구에서 2명과 1명 정도의 고공을 데리고 있었는데 1801년의 강봉휴는 2명을 나머지 강종락과 강병훈은 각각 1명씩 거느리고 있었다. 1801년에는 공노비가 해방된 시점이기 때문에 준호구상에 공노비가 고공으로 기재되고 있지 않으며 대신 목자나 향소의 서원들이 고공으로 기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수황 종가에서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그리고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 마지막으로 19세기 후반에 걸쳐 고공을 데리고 있었으며 그 수는 최대 5명에서 최소 1명이었다.

이 가문에 고용되었던 고공의 성별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 만 남성 고공이 조금 더 많이 고용되었다. 5명의 고공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된 1678년의 경우 강두형은 남성 고공이 3명과 여성 고공이 2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4명의 고공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남성 고공 2명, 여성

고공 2명으로 기재되어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명일 경우에는 5명과 마찬가지로 남성 고공이 2명, 여성 고공이 1명으로 남성 고공을 1명 더 고용하였다.

1759년 이후 강시양의 경우는 고공이 1명일 경우 남성을, 2명일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고공 각각 1명씩 고용하였다. 이것은 인위적인 배경이 있기 보다는 출생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1777년 준호구에 기재된 내섬시비 흥량이 혼인을 하여 1780년과 1789년에 각각 아들 흥석과 흥태를 낳았으며 아들은 낳은 그해에 바로 고공으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1801년 강봉휴부터는 모두 남성 고공을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어도 진주강씨가의 이러한 고공의 수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2명의 제한을 지키지 않고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공정제가 활발히 논의된시기 가운데 1685년(숙종 11)에는 고공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고주가거느릴 수 있는 고공의 수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즉 한 사람의 고주가최고 2인의 고공까지만 거느릴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토호들이 많은 협호를 거느리기 위한 수단으로 고공을 사칭하여 양민을 관에 등록시키는 현상을 막고, 아울러 양역을 회피하기 위해 양인들이 권세가에게 투탁하는 것을 막고 양역자원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23)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고공의 수를 2명으로 제한하였지만 이는 진주강씨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고공의 존재 양상
- 1) 육지에 주인이 있는 외거노비가 고공이 된 사례
- 이 가문의 문서 가운데 고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

²³⁾ 강승호, 「조선후기 고공정제 연구」, 『실학사상연구』 10·11, 역사실학회, 1991, 559-560쪽.

기의 것은 1678년(숙종 4)에 제주목에서 강두형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 준호구에는 강두형의 고공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래와 같이 기재되 어 있다.²⁴⁾

康熙十七年十一月日濟州牧

考戊午成籍戶口帳內 右面第六於音非道內山里住第一統第五戸 展力副尉兼司僕姜斗炯年五十一戊辰本晉州

.

雇工 私奴 城丁 李秃男年三十八辛巳 主**该德羅萬**玉 父寺奴目隱山 母同私 婢甘之

雇工 私婢 甘之 年六十三丙辰 主懷德羅萬玉 父私奴甘千 母同私婢 万代

雇工 內資寺奴 牧童城丁 高丁男 年二十己亥 父私奴丁老 母同寺婢禽玉

雇工 良女 丁上 年二十二丁酉 父正兵高丁周 母金召史

雇工 正兵 東伍 高先男 年三十二 丁亥 父正兵萬 母名不知等 乙卯戸口相 准借給者

率婢應生年二十己亥 父寺奴億万 母同私婢成生

率婢甲進年四乙卯父寺奴莫男母同私婢金生

行牧官[署押[着名]

吉挾字改印官印

官印二顆

이 준호구는 호주 강두형과 처의 四祖와 가족 및 데리고 있는 고공과 소유 노비를 기재한 것이다. 이 당시 강두형은 나이가 51세였으며 우면 제6 어음비도내산리 1통 5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거느리고 있는 고공은 李禿男, 甘之, 高丁男, 丁上, 高先男 등 모두 5명이었다.

강두형이 데리고 있었던 고공에서 주목할 만 한 인물은 바로 이독남과 감지이다. 이독남의 부모를 기재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독남과 감지는 서로 가족관계이다. 이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들은 사노로서 그 주인이 육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주인은 당시 회덕에 거주하였던 나만옥이었다. 즉 이들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

110, 亚头 | 1, 302号.

^{24) 『}고문서집성』 110, 준호구 1, 382쪽.

거노비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당시 강두형의 아들 강세건의 준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⁵⁾ 강세건의 1687년(숙종 13)의 준호구에는 한 명의 고공을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고공의 이름은 秦已云으로 사노로서 果直成丁의 역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당시 49세였다. 당시 진이운의 주인 또한 충청도 회덕에 거주하는 박세관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독남과 감지 및 진이운이 어떠한 사정으로 제주도의 외거노비가되었는지, 그리고 감지와 진이운이 어떻게 해서 진주강씨가의 고공이되었는지는 관련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준호구를 통해 17세기 중반 어도리에 거주하였던 진주강씨가의 인물들은 육지에주인이 있는 제주지역의 외거노비를 고공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주지역에 거주하였던 외거노비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된다. 조선시대에 제주지방에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그 주 인이 육지에 있는 외거노비가 많았다. 이들은 육지에 거주하는 자신의 주인에게 매년 신공을 바쳐야 했다.²⁶⁾ 그러므로 주인에게 바쳐야 할 신 공과 자신의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의 집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족 단위의 고공

이 가문의 준호구에 기재된 고공에는 가족단위의 고공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단위로 타인의 노비가 되는 사례들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해남윤씨 가문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 고공 또한 가족단위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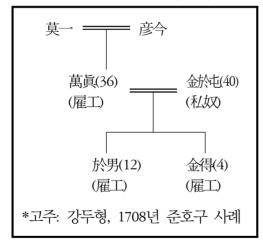
^{25) 『}고문서집성』 114, 준호구 2, 293쪽. 康熙二十六年十二月 日 濟州牧 考丁卯成籍戸口帳內 右面第六於道內山里住第一統二戸 業武把總姜世建年三十戊戌…雇工私奴果直成丁秦已云年四十九己卯 父正兵秦守 母私婢足斤德 主忠清道懷德居朴世寬等甲子戸口相準準給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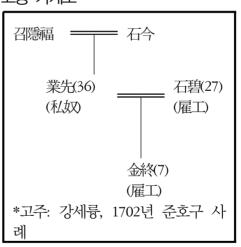
²⁶⁾ 어떠한 배경으로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거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시기에만 그런 것은 아니며 공노비가 해방되기 이전까지는 지속해서 가족형태의 고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진주강씨가에 이미 의탁해 있는 고공의 자식이거나 혹은 부모 중에 한 명이 소유노비일 경우 그 자식이 고공으로 호적에 입적되면서 가족 단위인 고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노 이독남과 비 감지는 강두형이 데리고 있었던 고공으로서 충청도 회덕에 있는 나만옥의 소유 노비였으며 서로 모녀관계였다. 준호구에는 1687년(숙종 13)에 이독남이 38세가 되었을 때 첫 고공으로 나타나지만 앞서 불망기를 통해 1658년(효종 9)에 이미 고공이 되었음은 살펴본 바 있다. 이밖에도 가족단위로 고공이 된 사례가 더 있다. 준호구에 기재된 고공 가족의 가계도를 간략하게 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가족 형태의 고공 가계도





첫째 사례는 시비 만진과 사노 어둔의 자식들이 이 가문의 고공이된 사례이다. 1702년(숙종 28)에 작성된 준호구에는 내자시시비 만진과시노 어남, 그리고 내자시비 석진 등 3명의 고공이 기재되어 있다. 이가운데 만진과 어남은 모녀 관계로 어남의 아버지는 어둔이다. 그렇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해서 강두형의 고공이 되었을까?

먼저 강두형의 집에 가장 이른 시기에 들어온 인물은 사노 어둔이다.

어둔은 본래 제주도에 거주했던 사노가 아니었으며 담양에 거주하는 윤애철 소유의 노였다. 윤애철은 1687년에 흉년이 들어 자신의 소유인 노를 방매하여 생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아들인 윤경신에게 제주도에 가서 19살이 된 노 어둔을 방매하라고 지시하였고, 윤경신은 제주도에 입도한 후 강두형에게 말 5필을 받고 노 어둔을 방매하였다. 27) 노 어둔은 강두형 소유의 노가 된 이후 만시비 만진과 혼인을 하였다. 혼인을 한 시기는 1702년에 어남이 6살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696년(숙종 22) 전후로 보인다. 다만 이 당시에 준호구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남이 언제 고공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리고 1708년(숙종 34)의 준호구에는 어둔과 만진의 자식으로 당시 4세 였던 시노 금특이 다시 강두형의 고공이 되었다. 금특은 1705년(숙종 31)의 준호구에는 기재되지 않았고 3년 후의 준호구에 기재된 것으로 볼 때 그 전부터 고공으로서 호적에 입적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사례는 강두형의 아들인 강세륭의 준호구에 기재된 고공들이다. 강세륭은 1696년에 아버지와는 별도의 호에 거주하면서 노비 2구와 고공 2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고공은 내섬시노 강후봉과 내섬시비 석벽이다. 다음 식년인 1699년(숙종 25)의 준호구는 남아있지 않고 1702년의 준호구에는 3명의 고공이 입적되어 있다. 1696년과 달리 강후봉은 고공으로 입적되어 있지 않고 석벽과 金絲, 이독남 등이 고공으로 입적되어 있다. 이 가운데 김종은 강세륭의 소유 노인 김업선과시비인 석벽이 혼인을 한 후 낳은 자식이다.

W W W . K C I . E

^{27) 『}고문서집성』110, 사급3, 337쪽. 康熙二十六年丁卯五月初一日 濟州居品官姜斗炯前明文 右明文事段 父亦鄭斗星處 婢每良四所生奴於屯伊年三己酉生身乙 買得為有如可 適有要用之事 同奴於屯伊身乙 珍島居李以泰處放賣為有如乎 同李以泰亦 矣父尹愛哲處 同奴於屯伊乙還為放賣為有乎 值此凶荒 生理無策乙仍于 子矣身乙 委送濟州 而所買奴子放賣後 價物棒來亦為有等以 同婢每良四所生奴於屯伊年十九己酉生身乙 同姜斗炯前 放賣為遣 價本段 四禾雄馬一匹 禾雄馬三匹 六禾雌馬一匹等 伍匹准計捧持後 同奴於屯伊及本文記粘付立案并以 同姜斗炯前永永放賣為去乎 日後良中族類中 如有相爭人是去等 持此文記告官辨正事 奴主譚陽居尹慶信着名] 證人許孝一[着名] 證人洪問近左手寸] 筆執金忠建[着名]

이 두 사례를 통해 자식을 곧바로 고공으로서 호적에 등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두형과 강세륭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내종과 이 집안에 寺婢로서 고공으로 고용되어 있던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 을 곧바로 고공으로 삼고 호적에 입적시키고 있다. 이는 18세기 후반에 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사노와 시비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은 강두 형과 강세륭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공노비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고 주의 호적에 입적시킬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태어나자마자 호적에 고공으로 기재되었을까?

이와 같은 상황은 1680년(숙종 6)에 정부에서 논의한 고공정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고공은 명확한 신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노동자를 모두 고공으로 칭하고 있었다. 28) 이에 대해 민정중은 고공률을 정하기 위해서 고공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공술을 받아서 명부를 작성하여 일시 고역자와 구분해야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당시 고공의 유형을 관청에 등록하여입안을 발급받는 고공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었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야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리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고주의 호적에 부기하도록 하였다. 29) 비록 이 사안은 호적에 등록하는 고공과 일시적인 고공을 구분하자는 것이었지만 어도 진주강씨가의 준호구에 보이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태어난 자식들을 고공으로 삼고 아울러 호적에 입적하는 모습은 일시적인 고역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중앙정부의 위와 같은 논의를 반영한결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태어난 자식들을 곧바로 고공으로 입적시킨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 들은 수양고공도 아니었다. 수양고공은 1695년(숙종 21)에 유리걸식자를 구제하기 위한 진휼책의 하나이다. 이때 마련된 진휼청사목에 의하면 13세 이상의 유리걸식자는 양민이거나 공사천을 막론하고 그에게 밥을

²⁸⁾ 강승호, 앞의 논문, 555쪽.

²⁹⁾ 강승호, 앞의 논문, 559쪽.

먹여주고 사환을 시켜 종신토록 고공으로 삼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즉 나이 제한이 13세 이상이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주강씨가의 경우 이미 수양고공이 논의되기 전일 뿐 아니라 유리걸식자도 아니었으며 나이 또한 13세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수양고공이 아니다. 다만 공노비의 후손으로서 부모가 이미 타인의 집안에 의탁하는 고공일 경우 같이 데리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고공으로 입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3) 고공의 성격 - 신분·연령·기한

이 가문에 고용되었던 고공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고 공의 신분과 나이, 그리고 고공의 기한 등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 가문에 고용되었던 고공의 신분과 직역을 살펴보자. 양인신 분의 고공은 1678년에 강두형 집안에 고용되었던 丁上이며 그의 직역을 良女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모두 공노비나 사노비인데 이중에서도 사노비보다 공노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노비의경우 여성 고공은 특별한 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남성 고공은 城丁이거나 혹은 東伍軍에 편입되어 있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78년에 고공으로 기재된 이독남과 고정남의 경우 각각 성정과 牧童城丁으로 지역이 기재되어 있고 또 같은 해에 기재되어 있는 高先男 의 경우 正兵東伍로 기재되어 있다. 공노비의 경우 대부분 內資寺・內贈寺・仁順府에 속해 있는 노비들이며 寺奴 혹은 寺婢로 그 소속이 어디인지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확인된다. 한편 1801년 공노비가 해방된 이후 고공의 신분을 살펴보면 대개 목자, 老閑, 향소서원 등으로 공노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고공의 연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검토하기 전에 가문에 소장된 준호구를 통해 고공의 연령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까지 호적중초를 통해 단일 지역의 고공 연령을 살펴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고공 연령의 단일 지역 검토는 시기별 연령 분포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통계를 이용하여 고공의 성격을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가문으로 한정하여 고공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연령 분포의 통계를 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고공으로 같은 인물이 지속해서 나오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고공의 규모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의 분포보다는 당시 고공의나이가 어느 정도 였는지 그 경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시기별로 볼 때 17세기 후반에는 대체로 6살인 高口录을 제외하고 모두 20대 이상의 연령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독남은 1678년의 준호구에는 38살로 기재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58년에 계약을 통해서 이른 나이에 고공이 된 바 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감지는 63세일 때 고공으로서 준호구에 기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에들어서도 준호구에 기재된 고공의 연령은 대체로 비슷하다. 1705년에는 감지와 같이 문막남이 63세에 고공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공이 된 첫 연령을 살펴보면 태어난 자식이 준호구에 고공으로 기재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10대~60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연령분포를 노동력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대체로 장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력이나 우마를 사육하는 노동력, 가내 갖은 잡일을 담당했을 것이다.

한편 태어나자마자 고공으로 곧바로 준호구에 기재되는 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 17세기 후반 진주강씨가에 의탁하고 있는 고공이나 소유노가 공비와 혼인을 하여 낳은 자식은 바로 호적에 입적되었음은 이미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은 18세기에도 확인되는데 1780년에 강시양의준호구에 보이는 흥석, 1789년(정조 13) 강시양의 준호구에 보이는 흥태, 1798년 역시 강시양의 준호구에 보이는 귀녀 등이 1세에 고공이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흥석은 13세까지, 흥태는 4세까지 준호구에 고공으로서 기재되었고, 귀녀는 그해 한 해에만 고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고공기한에 대해 살펴보자. 고공의 기한을 법제적으로 처

음 정한 시기는 1783년(정조 7)이다. 이때 정조는 신하들과 논의한 끝에 5년을 기한동안 10량을 임금으로 받는 사람들만을 고공으로 삼기로 정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고공이 되고 싶을 경우 입안을 받으면 대부분 기간에 상관없이 장기간동안 고공이 되었었고 또 일부 함경도 지방은 이미 고공이 예속화되는 현상이 전부터 있었다.

이 가문의 준호구에 기재된 고공의 사역 기간은 대부분이 5년 이상의 고공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1678년과 1684년의 강두형 준호구에 기재된 양녀 정상은 6년을, 1702년부터 1708년까지 준호구에 기재되어있는 어남과 그의 어머니 만진이 그러하며 1696년부터 1705년까지 강세륭의 준호구에 고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석벽과 그의 아들 시노 김종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18세기에 강시양의 준호구에 보이는 시비 흥량또한 1777년부터 1792년까지 고공으로 사역하고 있고 그의 아들 흥석또한 마찬가지로 1780년에 태어나자마자 호적에 입적되어 1792년의 준호구까지 고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고공정제의 논의와 상관없이 고공의 고용기간은 매우 장기간동안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있다.

한편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해서 고공이 된 사례를 살펴볼수 있는데 바로 이독남의 사례가 그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독남은 8년을 계약으로 1658년에 강두형 집의 고공이 되었다. 그러므로 계약대로라면 1666년(현종 7)을 전후하여 고공 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독남은 1678년에 38살의 나이로 고공으로서 강두형의 호적에 입적되었고, 심지어 1705년 65세가 될 때에는 그의 아들 강세륭의 고공으로 다시 호적에 입적되고 있다. 물론 1678년부터 1705년까지 준호구가 연속적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고공으로 고용되었는지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독남은 아버지 강두형에서 아들 강세륭에 이르기까지 진주강씨가의 고공으로 사역하였음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족단위로 구성된 고공의 경우 대부분 오랫동안 진주강씨가에 의탁하면서 고공으로 사역했음을 알 수 있다.

고공은 호적의 기재유무에 따라 입안고공과 무안고공으로 나눌 수

있다.30) 위의 사례는 대부분 立案雇工이다. 입안고공은 경제적인 이유로 고공이 되어 고주로부터 고가를 비롯하여 의식주 등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고용되었다. 또한 이들은 無任雇工이자 仰役雇工의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무임고공은 고주로부터 고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고공을 말한다. 앞서 불망기와 명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대신 해결해주는 자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고가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고공은 고용기간이 매우 장기화 되어 앙역고공의 형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아울러 예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어도 진주강씨 강우석 소장 고문서 가운데 불망기와 명문, 그리고 준호구를 통해서 이 가문에 고용된 고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문서들을 통해 17세기 중반부터 고공의 계약과 존재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동색마와 채무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고공으로 계약했으며 이때 계약서로 불망기와 명문을 작성하였다. 이 가문에서 데리고 있었던 고 공의 수는 17세기에는 2~5명이었으며 18세기에는 1~3명이었다. 특히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공의 수는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고공의 보유 수 2명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는 18세기 후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고공의 보유 수 제한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문에서는 육지에 주인이 있는 외거노비를 고공으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거노비들은 매년 육지에 있는 주인에게 신공을 바쳐야 했고 자신의 생계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의탁하면서 가내 잡역 등

WWW.KCI.go.KI

³⁰⁾ 입안고공과 무안고공 등 고공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강 승호, 『조선시대 고공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44-46쪽.

노동력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또한 태어난 자식을 고공으로 호적에 입적시키고 있는 모습은 1680년 중앙정부에서 일시적인 고공과 구별하기위해 장기간 고용되는 고공을 호적에 입적시키도록 한 것과, 또 생계가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공으로 입적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도 진주강씨가에 고용되었던 대부분의 고공은 호적에 입적되었고, 장기간 동안 고용되었으므로 입안고공이자 무임고공 및 앙역고공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제주지역의 고공에 대해 살펴 본 논문이지만 한 가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객관화 시킬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제주지역의 고공에 대해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공이 기재된 호적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의 조사와 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른 가문의 사례를 비롯하여 제주에서 작성한 고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제주지역의 고공에 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문서집성』10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고문서집성』11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고문서집성』1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강승호, 「조선후기 고공정제 연구」, 『실학사상연구』 10·11, 역사실학회, 1991.
- 강승호, 「단성현 호적대장을 통해 본 고공」, 『역사와 실학』 17~18, 역 사실학회, 2000.
- 강승호, 『조선시대 고공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동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대정현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고씨 일가 호구자료의 분석」, 『탐라문화』 19, 제 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8.
- 박경,「自賣文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하층민 가족의 가족질서」, 『고문서 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 박용숙, 「18·19세기의 雇工-경상도 언양현 호적의 분석」, 『부대사학』 7, 부산대학교 시학회, 1983.
- 이정수, 김희호, 「17~18세기 고공의 노동성격에 관한 재해석」, 『경제사학』 47, 2009.
- 정긍식, 「1783년(정조 7) 고공정제의 성립과정」, 『서울대학교 法學』 59, 2018.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사회배경/ 방언/민요/설화/신앙」, 『국문학보』 16,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2004.
- 한영국, 「조선후기의 고공-18·19세기 대구부 호적에서 본 그 실태와 성격-」, 『역사학보』81, 역사학회, 1979.
- 허원영, 「제주 애월읍 수산·중엄·하가리 고문서와 조선후기 제주의 부세운영」, 『고문서집성』 10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ABSTRACT

Existence Conditions of Gogongs(雇工) Employed by Jeju Eado(於道) Jinju Gang Clan(晉州姜氏家) in the Late Joseon

-Focusing on Ancient Document Owned by Gang Useok

Jo, Jung-gon*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ence conditions of Gogngs employed by the Jinju Gang Clan, through Myeongmun(明文), Bulmanggi(不忘記) and Junhogu(進戸口), colected by Mr. Gang's family belonging to the Jinju Gang Clan, which has lived through successive generations in Eori-do, Jeju. At first, the members of the Jinju Gang Clan resided in Sangnga-ri(上加里) and Eodo-ri(於道里) after the mid-17th century and successively held Yuhangjawsu(留絕座首) and Yuhangbyeolgam(留絕防監)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o it possessed a lot of properties based on its social status.

The Gogong contracts signed by this clan and the existent conditions of the Gogongs were examined to show that such a contract was made through Myeongmun and Bulmanggi. Myeongmun was written when the reasons why they became Gogongs were not described, while Bulmanggi was filled, if economic reasons such as debts were stated. The Gogong contracts were made, mostly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related with Dongsaekma(同色馬) and unpaid debts. At that time, the contracts were usually made with the condition of relatively long terms ranging from 5

city of Twicair octains

^{*} Doctor, Major in Diplomatics and Bibliograph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 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o 8 years. The number of Gogongs employed by this clan was about 4-5 in the late 17th century and about 1-3 in the late 18th century, but about 2-3 Gogongs were most often employed by it. The sex ratio of Gogongs employed by this clan was not significantly imbalanced, but male Gogongs were slightly more than female Gogongs.

Some cases in which Oegeonobi whose owners resided in the mainland became Gogongs could be verified from this clan. They are supposed to live in areas far away from their owners and make the Gogong contracts with others, to make a living, and also give Singong to their owners. It could be also found that family units of Gogongs existed. This means that children born from Gogongs employed by this clan or Sano(private servants) owned by it also became Gogongs, so two generations of Gogongs sheltered themselves in one house.

Finally, the status, age, terms and so on of Gogongs were investigated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Most of employed Gogongs were Gongnobi(public servants) and Sanobi, and only one Gogong who lived in 1678 was verified as Yangin(a common person). Most of Gongnobis belonged to Naejasi(內資寺), Naeseomgsi(內贍寺) and Euijeongbu(仁順府) and were Sinos(寺奴) and Sibis(寺婢), but where some of them belonged to were not stated. After Gongnobis were liberated in 1801, the social positions of them were often Mokja, Nohan(老閑) and Hyangsoseowon, so it was not possible to identify whether they were Gongnobis. Although most of Gogongs were grown up, those over 60 are sometimes found. Some children were registered as Gogongs, as soon as they were born. Finally, the terms of them were examined to exhibit that they were often employed for longer than five years. The terms of Gogongs employed by the Gang Clan prolonged, they Jinju were very SO Angyeokgogongs and subordinated to it. As they resided in their owner's hous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ey seem to be responsible for many

76 **탐라문화** 제66호

miscellaneous works(榮哲党) and to provide agricultural labor forces.

Key-words: Jeju, Eodo-ri, Jingju Gang Clan, Gogong, Junhogu, Bulmanggi, Myeongmun

논문투고일 2021. 1. 31.

심사완료일 2021. 3. 8.

게재확정일 2021. 3. 21.